

장기 요양 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I. 기본정보

기관명	노인요양원 샬롬하우스	대표	목범수
설치일자	2019.11.08	급여종류	노인요양시설
소재지	화성시 서신면 계곡촌길 23		
전화번호	031-357-3917	팩스번호	031-357-3027
홈페이지	www.shalomhouse.co.kr		
이용대상	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을 가진 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등급 판정위원회로부터 장기요양 인정자로 판정을 받은 자로 한다.		

II. 이용정원 및 이용자 모집 방법 등에 관한 사항

1. 이용정원 : 94명
2. 이용자 모집방법 : 샬롬하우스 홈페이지, 지인소개, 현수막 게시대 홍보, 인터넷 광고 등

III.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서비스 계약목적	①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 제공자와 서비스 이용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급여계약	①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원장과 이용자나 보호자 간의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원장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③ 이용자나 보호자에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 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된다. 다만 정원이나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장기요양 인정등급 또는 인정유효기간,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비용 등 어느하나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계약에 반영 재계약서를 작성한다
계약해지	① 이용자가 타 기관으로 이전 또는 사망하였을 때 ② 다른 이용자인 권과 안전(감염병 등)에 심대한 위협이 될 때 ③ 시설 규정에 따른 직원의 통제에 불응하고 위협하거나 폭력을 행할 때 ④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할 때 ⑤ 이용료 연체가 2회이상일 때(단, 보호자의 사정에 따라 서로 협의가 된 경우 제외)
신원인수인권리	①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② 전화상담이나 보호자 방문시 상담등을 통하여 서비스질을 평가하고, 결과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신원인수인의무	① 이용자에 관한 건강정보 등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 ② 이용자의 이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의무 ③ 이용자의 주소 등 변동내용을 즉시 통보할 의무 ④ 보호자가 변경된 경우 동보할 의무 ⑤ 요양원 이용과 관련된 규칙 등 이행의무
배상책임보험	① 시설에 입소중인 수급자 전원 또는 급여를 제공하는 종사자(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종사 인력 전원을 기준으로 가입하여 안전사고에 대비한다.

IV. 기타 사항

- *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 이용료 변경 시 : 보호자 상담 → 변경된 비용 적용일 안내 → 정산(환급 또는 추가 납부)
 - 연도별 본인부담금 수가 변경 시 : 소식지와 함께 안내문 발송 → 상담 → 변경계약서 작성
- * 비급여대상 항목별 비용(30일 기준)
 - 식재료 : $2,200 \times 3 \times 30 = 198,000$ 원
 - 간 식 : $1,400 \times 30 = 42,000$ 원
 - 상급침실료 : $10,000 \times 30 = 300,000$ 원
- *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 서비스 내용 : 신체활동 지원, 일상생활 지원, 정서 지원, 인지 활동 지원, 여가 활동 지원
간호 및 기능 회복 훈련, 지역사회 연계, 목욕 서비스 등
 - 입소자(보호자)의 요청으로 외부 인력을 통해 개인적인 서비스를 받는 비용은 개별적으로 부담함
- *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1. 신체구속 : 절박성 또는 비대체성의 성격을 가진 경우 보호자 상담 및 동의를 통해 신체구속을 진행하고 구속에 대한 기록을 정확하게 기록한다.
 2. 특별실 사용 : 감염병 확진으로 격리가 필요할 경우 / 임종 전 특별실 사용이 필요할 경우
- *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1. 의료서비스가 필요할 경우 (외래, 치과 등) : 보호자 협의 후 진료 진행
 2. 응급상황 발생 시 : 의료기관 이송 + 보호자 연락 → 보호자에게 인계 (병원 또는 시설)
 3. 감염병 발생 시 : 격리를 통한 감염 예방, 의료서비스 제공
 4. 월 2회 이상 협력 의사 시설 방문 진료 / 방문간호, 계약의 진료
→ 이용 비용은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부담
- *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 사항
 1. 이용자 : 흥기 및 자해에 이용될 수 있는 물건 또는 기타 위험한 물건 반입 금지
- * 배상책임 / 면책 범위
 1. 배상책임 : 서비스 제공 중에 이용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손해를 끼쳤을 때, 그에 해당하는 배상을 해야 한다.
 2. 배상책임 보험 : 시설 입소자 전원 또는 급여 제공 직원(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 치료사) 종사 인력 전원을 기준으로 보험에 가입하여 안전사고에 대비
예) 어르신 낙상으로 인한 부상 시, 과실 비율에 따라 보험금 지급
 3. 면책 범위 : 제 3자의 귀책 사유로 발생한 손해 및 살롱하우스의 귀책 사유가 없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①일상생활 중, 자연적인 사망 ②이용자 임의로 외출·외박 중, 상해 또는 사망
③천재 지변으로 인한 상해 또는 사망 ④이용자 본인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상해 또는 사망